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41
----------	------

2021년 6월 23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5. 27. 박기열 의원(권수정 의원 등 29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21. 6. 1.

다. 상정 일자 : 제30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1년 6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제24조의2제1항제1호~3호)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는 해당되지 않음.
- 본 조례의 별지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제1호), 의원상해등보상금 청구심의결과통보서(제2호)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

- 세종 등 11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실무적으로 생년월일로 대체하여도 업무상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해당 의원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함(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201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4년 8월 시행)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으로써 보상금 대상 의원과 보상금 청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음.

2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별지 제1호·제2호 서식)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제24조의2).
- 빈번하게 발생해온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이러한 유출 사고를 야기한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법인·단체 등)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제대로 부과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함임.¹⁾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과 별지 제2호 서식(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에서 보상대상의원과 보상금 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음.
- 해당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2011년)되기 이전인 1995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양식으로, 이후 개정 없이 현재까지 운영 중임.

1)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1. 6. 7.)

- 그러나 별지 서식에서 요구하는 보상대상의원과 보상금 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보상금 지급 심의 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²⁾
-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34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는 지방의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허용하는 내용이 없으므로,³⁾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상대상의원과 보상금 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로 현재 인천광역시의회를 비롯한 11개 광역의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운영 중임.⁴⁾
-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2013년)된 지 8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채 보상대상의원과 보상금 청구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해왔음.
- 본래 법령의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작업은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가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방치하여

2) 보상금 지급 심의에 필요한 부속 서류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 가능하므로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담당자 확인 결과, 확인일: 2021. 6. 4.).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각호에서는 다음 각호로써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4) 미개정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6개 지역(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검색일: 2021. 6. 7.)

결국 의원 발의로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2019년에도 본 개정안과 유사한 개정 목적을 가진 개정규칙안이 의원 발의로 제안되었던 적이 있는바,⁵⁾ 의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의회사무처는 개정된 상위법 내용 반영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찾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5)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0-01051, 제안일: 2019. 10. 15., 홍성룡 의원 발의(김제리 의원 등 10명 찬성)).

제안 요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청원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박기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41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 박기열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권영희, 김경영,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재, 박상구,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이성배,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최 선,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의원(29
명)

1. 제안이유

-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제24조의2제1항제1호~3호)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는 해당되지 않음.
- 본 조례의 별지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제1호), 의원상해등보상금 청구심의결과통보서(제2호)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

- 세종 등 11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실무적으로 생년월일로 대체하여도 업무상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해당 의원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함.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	----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	----	----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		----
----	----		<u>주민등록번호</u>		----	----		<u>생년월일</u>	
	----		<u>주민등록번호</u>			----		<u>생년월일</u>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		----	----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		----	
----	----		<u>주민등록번호</u>		----	----		<u>생년월일</u>	